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육성
- 나. 이에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 기 관 명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대표이사 : 김철우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 예동빌딩 9층
-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2) 출자예정액 : 금600,000천원 (3차년도)

※ 기납부액 : 1,400,000천원 (1~2차년도)

3) 출자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0조

나. 사업개요

1) 조 합 명 :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지방기업) 선정 조합
- 결성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2) 운 용 사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3) 출 자 자

- 특 별 조 합 원 : 한국모태펀드
- 유한책임조합원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외철(개인투자자), 알앤씨(관내 기업)
- 업무집행조합원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4) 조합결성액 : 100억원

- 연도별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000	3,000	4,000	3,000
한국모태펀드(국비)	5,000	1,500	2,000	1,500
경 북 도	1,000	300	400	300
구 미 시	2,000	600	800	600
강 외 철	800	240	320	240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500	150	200	150
알 앤 씨	200	60	80	60
운 용 사	500	150	200	150

5) 존속기간 : '16. 12. 28 ~ '24. 12. 27(8년) *출자금 납부 : 3년

6) 투자대상

- 구미·경북 소재 중소·벤처기업
- 타지역 중소·벤처기업(관내 유치 목적)

7) 운영방법 : 투자상담회 수시개최(업체 개별방문 등)

8)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

9) 추진경과

- '16. 6. 27 지방상생펀드 운용사 최종선정
- '16. 12. 21 설립출자금(1차 6억원) 납부
- '16. 12. 2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중소기업청)
- '17. 1. 17 사업 및 투자설명회 개최
- '17. 6. 30 출자금(2-1차 4억원) 납부
- '17. 10월 출자금(2-2차 4억원) 납부 예정

다. 출자의 필요성

- 1)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산업과 최첨단 신 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 3)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 5)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1회 추경예산편성 (6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이 창 형
	담 당	유 경 숙
	담 당 자	임 애 리 (480-6033)